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2004 북한인권법(H.R.4011)

### SECTION 1. 줄임제목

이 법은 '2004 북한인권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 SEC 2. 목차

이 법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Sec1. 줄임제목

Sec2. 목차

Sec3. 조사결과

Sec4. 목적

Sec5. 정의

### TITLE I -북한인의 인권증진

Sec.101. 북한과의 협상에 관한 미의회의 입장

Sec.102. 인권과 민주주의의 프로그램 지원

Sec.103. 대북 라디오 방송

Sec.104.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

Sec.105. 유엔인권위원회

Sec.106. 지역 체제의 설립

Sec.107. 북한인권특사

### TITLE II -궁핍한 북한인 지원

Sec.201.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보고

Sec.202. 북한 내에 제공되는 지원

Sec.203.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

### TITLE III -북한난민 보호

Sec.301.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미국 정책

Sec.302. 난민 또는 망명 고려 자격

Sec.303. 난민신청촉진

Sec.304.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Sec.305. 연례보고서

### SEC.3. 조사결과

의회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미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수많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김정일의 절대독재치하'에 있다.
- (2) 북한정부는 북한내의 모든 정보, 예술표현, 학문연구와 미디어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외국 방송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 (3) 북한 정부는 국교의 수준에 이르는 김정일과 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지지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주입을 하고 있다.
- (4) 북한정부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하여 국민을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 교

육, 고등교육, 거주지, 의료시설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짓는다.

(5)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형법은 광범위한 '반혁명범죄'에 대해 사형과 자산몰수를 명시한 가혹한 것'으로서 반혁명범죄에는 이탈, 이탈시도, 당 또는 국가 정책에 대한 비방, 외국 방송 청취, '반동적' 서신 작성 또는 인쇄물 소지가 포함된다.

(6) 북한 정부는 정치범, 반체제자, 송환된 탈북자들, 지하교회의 구성원 등을 때때로 노동자, 학생, 취학아동이 참석한 공개집회에서 처형한다.

(7) 북한정부는 2십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을 수용소에 두고 있으며, 국가안전부는 강제노동, 구타, 고문, 처형을 통해 이들 수용소를 운영하며, 많은 수인들이 질병, 굶주림, 노출(exposure)로 인해 사망한다.

(8) 북한수용소 생존자가 미의회에 제공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노예노동, 격투기 연습 상대, 생화학 물질의 실험대상으로 이용돼왔다.

(9) 미의회에 제공된 목격자 증언을 포함하여 신뢰할만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당국자는 수용소내의 출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낙태와 신생아 살해가 수용소의 기본관행이다.

(10) 국무부에 따르면,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계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체포, 투옥, 고문, 때때로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진 형벌에 처함으로써 '북한은 공적·사적인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억압'하고 있다.

(11) 북한정부가 운용해온 중앙집중식 농업과 공적 분배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90년대 초반부터 2백만명 이상의 북한인이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2002년 유엔과 유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10명 중 1명은 급성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이다.

(13) 95년 이래로, 미국은 주로 세계식량프로그램(WFP)를 통해 2백만톤 이상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북한인에게 했다.

(14) 미국의 식량지원이 많은 북한인의 생명을 구한 것이 확실하고, 원조분배의 투명성에서 소기의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정부는 임의적인 현장방문권동, 한국어 구사 직원의 고용, 북한내의 여행을 포함하여 식량원조전달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기에 필수적인 WFP의 접근형식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15) 북한의 기아의 위협, 처형의 위협, 자유와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수십 만 명에 이르는 북한인이 고국을 떠나 주로 중국으로 탈주하게 됐다.

(16) 중국으로 탈주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납치, 인신매매, 성적착취의 위협에 처해있으며, 중국에서 상당수가 신부 또는 처로 매매되거나 성매매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17) 중국과 북한정부는 허가 없이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인을 찾아내어 강제송환하기 위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여왔고, 북한에서 탈북자들은 일상적으로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에 직면해있다.

(18)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망명처를 구하는 북한인을 단지 '경제적 이주자'로 분류하고 그들이 귀환하면 직면하게 될 처벌의 심각한 위협을 고려치 않고 귀환시키고 있다.

(19) 중국정부는 51년 유엔난민협약과 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추방에 앞서서 망명요청이 거절된 북한인에게 망명신청 각하를 제시사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20) 중국에서 망명하려 했던 북한인들은 북한으로 송환된 후에 일상적으로 투옥되고 고문

받으며, 어떤 경우엔 살해당한다.

(21) 중국정부는 북한 난민을 지원하려는 시도 속에서 중국법이나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외국인 지원 활동가들을 억류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투옥해왔다.

(22) 2000년 1월, 중국내의 북한 기관원들이 미국 영주권자이자 북한난민옹호자인 김동식 목사를 납치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의 상황과 소재는 알려지지 않은 채이다.

(23)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남한은 3,800여명의 북한난민에게 국내 재정착을 허용했으며, 이 숫자는 전체 탈북자의 숫자와 비교하면 작지만 다른 어떤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숫자보다는 많다.

(24) 북한난민의 재정착에 대한 주된 책임이 당연히 남한정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들 난민의 곤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 심각한 인도주의적 딜레마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조직화하는데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25) 자국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 외에도, 북한정부는 과거 수년동안 수많은 남한과 일본의 시민을 유괴한 데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상황과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SEC.4.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 (1) 북한에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증진하고,
- (2) 북한난민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증진하고,
- (3) 북한내의 인도주의적 원조제공에 있어 모니터링, 접근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 (4) 북한 내외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순환을 증진하고
- (5) 민주적인 정부 체제하의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증진하는 것이다.

#### SEC.5. 정의

이 법안에서

- (1) 해당 국회 위원회-'해당 국회 위원회'란 용어의 의미는
  - (A)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
  - (B)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
- (2) 중국-'중국'이란 용어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 (3) 인도주의적 원조-이 용어는 식량, 의약품, 의료품, 의복, 쉼터를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 (4)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 (5) 북한인-북한의 시민 또는 국민인 사람을 의미한다.
- (6) 남한-대한민국을 의미한다.

#### TITLE I --북한인의 인권증진

##### Sec.101. 북한과의 협상에 관한 미의회의 입장

북한인의 인권은 미국, 북한, 기타 동북아시아의 관련 당사국들간의 미래 협상에서 핵심 요소여 한다는 게 미 의회의 인식이다.

##### Sec.102.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a) 지원-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의 발전을 증진하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북한인 참여자와의 적절한 교육과 문화 교환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b) 정부지출금의 승인

- (1) 일반적으로--Sec 102를 실행하기 위해 2005년 회계연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백만달러를 지출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 (2) 유효성-(1)항에 따라 정부보조금 승인에 의거한 보조액은 지출되기 전까지 가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 Sec.103. 대북 라디오 방송

(a) 의회의 인식-북한에 대한 라디오 방송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이 북한에서 방해받지 않는 정보의 유포를 촉진해야 하며, 라디오자유아시아와 미국의 소리 방송을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하루 12시간 방송을 제공할 목적으로 BBG(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모든 미국정부부처 그리고 정부가 후원하는 비군사적·국제적 방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를 말함)가 대북방송을 현수준에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b) 보고서-이 법이 입법된 날로부터 120일 내에 방송이사회는 해당 의회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 (1) 현재 미국의 대북방송 현황을 기술하고
- (2) 하루 12시간으로 방송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담아야 한다. 여기에는 그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필요조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된다.

##### Sec.104.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

(a) 활동-대통령은 북한외부에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 수신기를 포함하여 북한정부에 통제되지 않는 정보 공급원의 이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북한 내부의 정보이용성을 증가시키기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권한이 있다.

(b) 정부보조금의 승인

- (1) 일반적으로-(a)항목을 수행하기 위해 2005년 회계연도에서 2008년까지 매년 2백만달러를 지출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 (2) 유효성-(1)항에 따라 정부보조금 승인에 의거한 보조액은 지출되기 전까지 가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c) 보고서-이 법이 입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후 매 3년마다, 국무장관은 관련 적절한 연방 부처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의회 위원회에 이 섹션에 의거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기밀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Sec.105.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개선하는데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그리고--

- (1)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 2003/10과 2004/13을 채택하고 특히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을 요청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2) 북한내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유엔워킹그룹, 강제적이고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워킹그룹, 비사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식량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특별특별보고관의 특별관심대상국과 보고의 근거가 된다.

#### Sec.106. 지역 체제의 설립

- (a) 조사결과-인권, 과학과 교육 협력, 경제와 무역문제를 토의하는 지역 구조를 설립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원적 기초 위에서 인권의 의제가 채택될 수 있다.
- (b) 의회의 인식-미국은 헬싱키 과정을 모델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 대한 공동의 헌신 속에서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적 인권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 Sec.107. 북한인권특사

- (a) 특사-대통령은 국무부내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아래, '특사'로 언급). 특사는 인권분야에서 인정된 공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b) 주요 목적-특사의 주요 목적은 북한인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 (c) 의무와 책임-특사는
- (1) 북한당국자와의 인권에 관한 토론에 관여해야 한다.
  - (2)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 북한, 동북아 국가들간의 조정과 대화를 포함하여 북한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 (3)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온 민간단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 (4) Sec102에서 인준된 활동기금에 관한 권고를 해야 한다.
  - (5) 기술훈련과 교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북한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 (6)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 (d) 활동보고서-이 법 입법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후 5년간 매년 (c)항에 의거하여 그전 12개월동안 취해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TITLE II-공립한 북한인 지원

#### Sec.201.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보고

- (a) 보고서-이 법 입법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후 매 2년마다, 미국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관리자는 국무부와 합동으로 다음사항을 기술한 보고서를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북한내부에, 그리고 북한외부의 북한인에게 미국의 기금을 받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
  - (2) 전년 1년간 Sec 202(b)의 (1)-(4)항에 규정된 조건 충족을 향한 진전을 포함하여 북한내부에서의 인도주의적 투명성, 모니터링, 접근성에 대한 진전사항
  - (3) 전년 1년간 WFP를 포함하여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기관들이 북한내의 인도주의적 투명성, 모니터링, 접근성의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노력

- (b) 형식-소항목 (a)(1)항에 요구되는 정보는 필요하다면 기밀 문서로 제공될 수 있다.

#### Sec.202. 북한 내에 제공되는 지원

- (a) 민간 국제조직을 통한 인도주의적 원조-미 의회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 (1) 인도주의적 이유로 한 북한인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공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의회는 그러한 지원이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가장 취약한 북한인에게 도달할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모니터링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의 인식이다.
  - (2) 북한 내에 제공된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미국의 현 지원수준이 그 이상으로 상당히 증가하려면 투명성, 모니터링, 북한 전지역의 취약 층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상당한 증진이 조건이 되어야 한다.
  - (3) 미국은 북한정부와 직접적으로 쌍무이전되는 방식보다는 모니터링이 되는 투명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식량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타국들에게 장려해야 한다.
- (b) 북한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미 의회의 인식은
- (1) 북한정부의 어느 부서, 기관, 어떤 실체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도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도주의적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 (B) 필요에 기초해서 제공되어야지, 정치적 보상 또는 억압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 (C) 의도된 수혜자들에게 도달해야 하며, 수혜자들에게 원조 제공처에 대해 알려야 한다.
    - (D) 북한 내 어디에 살든지와 관계없이 북한의 모든 취약 집단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북한에 대한 미국의 비-인도주의적(non humanitarian) 지원은 북한이 다음 사항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 (A)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여 북한인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 (B) 북한인과 미국내의 자손과 친척들간의 가족 재결합의 제공
    - (C) 북한정부가 납치한 일본과 한국인에 관한 모든 정보의 완전한 공개
    - (D) 피납자들에게 그들의 가족과 함께 북한을 떠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완전하고 진정한 자유의 허용
    - (E) 북한 감옥과 노동수용소체제의 개혁, 그러한 개혁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적 모니터링
    - (F) 정치적 표현과 활동에 대한 해금  - (c) 보고서-이 법이 입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제개발처의 관리자는 이 섹션에 따른 보고서를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Sec.203.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

- (a) 지원-대통령은 북한정부의 허가없이 북한 외부에 있는 북한인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 (b) 지원 형태-(a)항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다음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돼야 한다.

(1) 북한 외부의 북한 난민, 이탈자, 이주자, 고아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여기에는 난민 캠프 또는 임시 거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2) 북한 외부의 북한여성, 2000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22 U.S.C.7102(14))의 103(14)항에 명시된 대로 인신매매의 피해자이거나 인신매매 될 위험에 처한 여성에 대한 지원

(c) 정부 보조금의 승인

(1) 일반적으로-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기금에 부가하여, 대통령은 이 섹션의 이행을 위해 2005년 회계연도에서 2008년까지 매년 2천만달러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2) 유효성-(1)항에 따라 정부보조금 승인에 의거한 보조액은 지출되기 전까지 가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TITLE III-북한난민 보호**

**Sec.301.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미국 정책**

(a)보고서- 이 법이 입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무부는 관련 연방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의회 위원회와 상하원의 사법위원회에 북한난민상황을 기술하고, 탈북자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 내용-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북한난민과 이주자가 특히 중국에서 숨어살며 겪는 상황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겪는 상황에 대한 고찰

(2) 중국내 북한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요원에게 난민신청을 위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중국정부가 51년 유엔난민협약하의 의무, 특히 협약 31, 32, 33조하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

(3) 북한인이 현재 미국의 난민신청절차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들어와 난민으로서의 보호나 미국으로의 망명과 재정착을 요구할 수 있는 북한인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고찰

(4) 과거 5년간 매년 난민 또는 망명자로서 미국에 입국한 북한인의 전체 수

(5) 미국 시민과 가족관계가 있는 북한인의 추정수

(6) 국무부가 Sec 303을 수행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기술

(c) 형식-(b) (1)-(5)항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비기밀문서로, 소항목(b)(6)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는 필요하다면 기밀문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ec.302. 난민 또는 망명 고려 자격**

(a)목적-이 섹션의 목적은 북한인이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시민권을 이 유로 하여, 미국에서 난민지위 또는 망명에 대한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북한인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시민권에 대한 어떤 권리든지 그를 침해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옛 북한국민에게 적용할 의도는 전혀 없다.

(b) 북한국민에 대한 처우-이주 및 국적법(8 U.S.C.1157) Sec 207하의 난민지위 자격규정 또는 유사법 Sec 208에 따른 망명(8 U.S.C.1158) 규정을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은 대한민국국민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Sec.303. 난민신청촉진**

국무부는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구하는 북한시민의 이주 및 국적법(8 U.S.C. 1157) Sec 207에 다른 신청 제출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유사법(8 U.S.C. 1101(a)(42)의 Sec101(a)(42)에 규정됐듯이).

**Sec.304.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a) 중국에서의 활동

(1) 1951년 유엔난민협약, 1967년 선택의정서, 그리고 UNHCR 중국 사무소에 대한 1995년 UNHCR 임무항상협약(UNHCR Mission Agreement) 3항 (5)에 따라, 중국정부는 난민 여부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를 UNHCR이 결정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이 UNHCR에 장애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미국, 기타 UNHCR 후원국과 UNHCR은 중국내의 북한난민에 대해 UNHCR이 방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전 약속을 준수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일을 끈질기게 최고 수준으로 지속해야 한다.

(3) UNHCR은 난민 보호를 위한 수임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중국내 탈북자 중에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가(professionals or Experts on Mission)로서 개방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4) UNHCR은 난민보호를 위한 수임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중국내 탈북자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경력을 가진 적절한 민간단체들과 개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5) UNHCR은 북한 난민에게 안전한 피신처와 지원을 보장할 효과적인 "보호 우선(first asylum)" 정책을 취하기 위한 다자간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6) 중국정부가 북한 난민에 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관련 국제 조직은 북한난민과 결부된 부담 비용을 돕기 위하여 중국 내에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원조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b) 중재 절차

(1)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계속 막는다면, UNHCR은 UNHCR 임무협정 17항에 따른 중재절차에 착수하고 중재자를 임명해야 한다.

(2) 난민에 대한 접근은 UNHCR의 수임사항과 UNHCR 지역사무소의 목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중재권 포기는 UNHCR이 그 핵심의무 중 하나를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일 것이다.

**Sec.305. 연례보고서**

(a) 이주정보 - 법 제정 후 1년 이내, 그리고 그 다음 5년 동안 매 12개월마다, 국무부와 국가안전국은 해당 의회위원회와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지난 1년 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북한 국민 또는 시민으로 정치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수, 정치망명을 허가받은 수

(2) 북한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의 수,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수

(b) 특별 관심 국가들 - 대통령은 이주와 국적법(8 U.S.C. 1157(d)) Sec 207(d)에 의거하여 .

제안된 난민허가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1988년 국제적 종교 자유법(22 U.S.C.6442(b))에 따라 규정된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특별 관심국들을 탈출한 개인들에게 미국의 난민프로그램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개별 특별 관심국에 대해 다음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 나라의 국민 또는 옛 거주자들을 난민으로 결정하게 된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 (1) 난민 판정에 대한 외부 기관의 추천
- (2) 난민 재정착의 목적으로 미국에 특별한 인도주의적 관심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들
- (3) 미국 내 혈연관계

<끝><번역: 인권운동사랑방>

--H.R.4011--

H.R.4011

*One Hundred Eighth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THE SECOND SESSION*

Begun and held at the City of Washington on Tuesday,  
the twentieth day of January, two thousand and four

An Ac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freedo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SEC. 2. TABLE OF CONTENTS.**

The table of contents for this Act is as follows:

- Sec. 1. Short title.
- Sec. 2. Table of contents.
- Sec. 3. Findings.
- Sec. 4. Purposes.
- Sec. 5. Definitions.

**TITLE I--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 Sec. 101. Sense of Congress regard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 Sec. 102. Suppor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grams.
- Sec. 103. Radio broadcasting to North Korea.
- Sec. 104. Actions to promote freedom of information.

Sec. 105.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Sec. 106. Establishment of regional framework.

Sec. 107. 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TITLE II--ASSISTING NORTH KOREANS IN NEED

Sec. 201. Report on United States humanitarian assistance.

Sec. 202. Assistance provided inside North Korea.

Sec. 203. Assistance provided outside of North Korea.

## TITLE III--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ec. 301. United States policy toward refugees and defectors.

Sec. 302. Eligibility for refugee or asylum consideration.

Sec. 303. Facilitating submission of applications for admission as a refugee.

Sec. 304.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Sec. 305. Annual reports.

## SEC. 3. FINDINGS.

Congress makes the following findings:

(1)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s 'a dictatorship under the absolute rule of Kim Jong Il' that continues to commit numerous, serious human rights abuses.

(2)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ttempts to control all information, artistic expression, academic works, and media activity inside North Korea and strictly curtails freedom of speech and access to foreign broadcasts.

(3)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subjects all its citizens to systematic, intensive political and ideological indoctrination in support of the cult of personality glorifying Kim Jong Il and the late Kim Il Sung that approaches the level of a state religion.

(4)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divides its population into categories, based on perceived loyalty to the leadership, which determines access to food, employment, higher education, place of residence, medical facilities, and other resources.

(5)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North Korean] Penal Code is [d]raconian, stipulating capital punishment and confiscation of assets for a wide variety of 'crimes against the revolution,' including

defection, attempted defection, slander of the policies of the Party or State,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s, writing 'reactionary' letters, and possessing reactionary printed matter'.

(6)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executes political prisoners, opponents of the regime, some repatriated defectors, some members of underground churches, and others, sometimes at public meetings attended by workers, students, and schoolchildren.

(7)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olds an estimated 200,000 political prisoners in camps that its State Security Agency manages through the use of forced labor, beatings, torture, and executions, and in which many prisoners also die from disease, starvation, and exposure.

(8) According to eyewitness testimony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by North Korean camp survivors, camp inmates have been used as sources of slave labor for the production of export goods, as targets for martial arts practice, and as experimental victims in the testing of chemical and biological poisons.

(9) According to credible reports, including eyewitness testimony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prohibit live births in prison camps, and forced abortion and the killing of newborn babies are standard prison practices.

(10)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g]enuine religious freedom does not exist in North Korea' and,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t]he North Korean state severely represses public and private religious activities' with penalties that reportedly include arrest, imprisonment, torture, and sometimes execution.

(11) More than 2,000,000 North Koreans are estimated to have died of starvation since the early 1990s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centralized agricultural and public distribution systems operat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12) According to a 2002 United Nations-European Union survey, nearly one out of every ten children in North Korea suffers from acute malnutrition and four out of every ten children in North Korea are chronically malnourished.

(13) Since 1995,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more than 2,000,000 tons of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primarily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14) Although United States food assistance has undoubtedly saved many North Korean lives and there have been minor improvements in transparency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such assistance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tinues to deny the World Food Program forms of access necessary to properly monitor the delivery of food aid, including the ability to conduct random site visits, the use of native Korean-speaking employees, and travel access throughout North Korea.

(15) The risk of starvation, the threat of persecution, and the lack of freedom and opportunity in North Korea have caused large numbers, perhaps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to flee their homeland, primarily into China.

(16)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particularly those who have fled into China, are at risk of being kidnapped, trafficked, and sexually exploited inside China, where many are sold as brides or concubines, or forced to work as prostitutes.

(17) The Governments of China and North Korea have been conducting aggressive campaigns to locate North Koreans who are in China without permission and to forcibly return them to North Korea, where they routinely face torture and imprisonment, and sometimes execution.

(18) Despite China's obligations as a party to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China routinely classifies North Koreans seeking asylum in China as mere 'economic migrants' and returns them to North Korea without regard to the serious threat of persecution they face upon their return.

(19) The Government of China does not provide North Koreans whose asylum requests are rejected a right to have the rejection reviewed prior to deportation despite its obligations under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0) North Koreans who seek asylum while in China are routinely imprisoned and tortured, and in some cases killed, after they are returned to North Korea.

(21) The Government of China has detained, convicted, and imprisoned foreign aid workers attempting to assist North Korean refugees in proceedings that did not comply with Chinese law or international standards.

(22) In January 2000, North Korean agents inside China allegedly abducted the Reverend Kim Dong-shik, a United States permanent resident and advocate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se condition and whereabouts remain unknown.

(23) Between 1994 and 2003, South Korea has admitted approximately 3,800 North Korean refugees for domestic resettlement, a number that is small in comparison with the total number of North Korean escapees but far greater than the number legally admitted in any other country.

(24) Although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n refugee resettlement naturally falls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should play a leadership role in focusing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 plight of these refugees, and formulating international solutions to that profound humanitarian dilemma.

(25) In addition to infringing the rights of its own citizen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as been responsible in years past for the abduction of numerous citizens of South Korea and Japan, whose condition and whereabouts remain unknown.

#### SEC. 4. PURPOSES.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 (1) to promote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2) to promote a more durable humanitarian solution to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 (3) to promote increased monitoring, access, and transparency in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side North Korea;
- (4)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and out of North Korea; and
- (5) to promote progress towar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a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

#### SEC. 5. DEFINITIONS.

In this Act:

- (1)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The term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means--
  - (A)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 (B)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f the Senate.
- (2) CHINA-- The term `China' mean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3) HUMANITARIAN ASSISTANCE-- The term `humanitarian assistance' means assistance to meet humanitarian needs, including needs for food, medicine, medical supplies, clothing, and shelter.
- (4) NORTH KOREA-- The term `North Korea' mean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5) NORTH KOREANS-- The term `North Koreans' means persons who are citizens or nationals of North Korea.
- (6) SOUTH KOREA-- The term `South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 TITLE I--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 SEC. 101. SENSE OF CONGRESS REGARDING NEGOTIATIONS WITH

## NORTH KOREA.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should remain a key element in future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nd other concerned parties in Northeast Asia.

### SEC. 102. SUPPOR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GRAMS.

(a) Support— The President is authorized to provide grants to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to support programs that promote human rights, democracy, rule of law, and the development of a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Such programs may include appropriate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with North Korean participants, to the extent not otherwise prohibited by law.

(b)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1) IN GENERAL— 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to the President \$2,000,000 for each of the fiscal years 2005 through 2008 to carry out this section.

(2) AVAILABILITY— Amounts appropriated pursuant to the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under paragraph (1) are authorized to remain available until expended.

### SEC. 103. RADIO BROADCASTING TO NORTH KOREA.

(a) Sense of Congress—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facilitate the unhindere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by increasing its support for radio broadcasting to North Korea, and that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should increase broadcasts to North Korea from current levels, with a goal of providing 12-hour-per-day broadcasting to North Korea, including broadcasts by Radio Free Asia and Voice of America.

(b) Report— Not later than 1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that—

(1) describes the status of current United States broadcasting to North Korea; and

(2) outlines a plan for increasing such broadcasts to 12 hours per day, including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technical and fiscal requirement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lan.

### SEC. 104. ACTIONS TO PROMOTE FREEDOM OF INFORMATION.

(a) Actions— The President is authorized to take such actions as may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inside North Korea by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sources of information not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ncluding sources such as radios capable of receiving broadcasting from outside North Korea.

**(b)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1) **IN GENERAL-** 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to the President \$2,000,000 for each of the fiscal years 2005 through 2008 to carry out subsection (a).

(2) **AVAILABILITY-** Amounts appropriated pursuant to the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under paragraph (1) are authorized to remain available until expended.

(c) **Report-**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in each of the 3 years thereafter, the Secretary of Stat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appropriate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in classified form, on actions taken pursuant to this section.

**SEC. 105.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United Nations has a significant role to play in promoting and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at--

(1)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 has taken positive steps by adopting Resolution 2003/10 and Resolution 2004/13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particularly by requesting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2) the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North Korea warrant country-specific attention and reporting by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SEC. 106. ESTABLISHMENT OF REGIONAL FRAMEWORK.**

(a) **FINDINGS-** The Congress finds that human rights initiatives can be undertaken on a multilateral basis, such as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which established a regional framework for discussing human rights, scientific and educational cooperation, and economic and trade issues.

(b) **SENSE OF CONGRESS-**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regional human rights dialogue with North Korea that is modeled on the Helsinki process, engaging all countries in the region in a common commitment to resp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EC. 107. 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 SPECIAL ENVOY— The President shall appoint a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ithin the Department of State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Special Envoy'). The Special Envoy should be a person of recognized distinc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 CENTRAL OBJECTIVE— The central objective of the Special Envoy is to coordinate and promote efforts to improve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c)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e Special Envoy shall—

(1) engage in discussion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regarding human rights;

(2)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and political freedoms in North Korea, including coordin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North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3) consult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o have attempted to addres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4) make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funding of activities authorized in section 102;

(5) review strategies for improving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ing technical training and exchange programs; and

(6) develop an action plan for supporting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4/13.

(d) REPORT ON ACTIVITIES—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annually for the subsequent 5 year-period, the Special Envoy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on the activities undertaken in the preceding 12 months under subsection (c).

## TITLE II--ASSISTING NORTH KOREANS IN NEED

### SEC. 201. REPORT ON UNITED STATES HUMANITARIAN ASSISTANCE.

(a) Report—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in each of the 2 years thereafter, the Administrator of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conjunc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that describes--

(1) all activitie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inside North Korea, and to North Koreans outside of North Korea, that receive United States funding;

(2) any improvements in humanitarian transparency, monitoring, and access inside North Korea during the previous 1-year period, including

progress toward meeting the conditions identified in paragraphs (1) through (4) of section 202(b); and

(3) specific efforts to secure improved humanitarian transparency, monitoring, and access inside North Korea made by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States grantees, including the World Food Program, during the previous 1-year period.

(b) Form—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ubsection (a)(1) may be provided in classified form if necessary.

## SEC. 202. ASSISTANCE PROVIDED INSIDE NORTH KOREA.

(a)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NON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is the sense of the Congress that—

(1) at the same time that Congress supports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on humanitarian grounds, such assistance also should be provided and monitored so as to minimize the possibility that such assistance could be diverted to political or military use, and to maximize the likelihood that it will reach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2) significant increases above current levels of United States suppor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d inside North Korea should be conditioned upon substantial improvements in transparency, monitoring, and access to vulnerable populations throughout North Korea; and

(3) the United States should encourage other countries that provide food and other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to do so through monitored, transparent channels, rather than through direct, bilateral transfers to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b) UNITED STATES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1) United States humanitarian assistance to any department, agency, or entity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shall—

(A) be delivered, distributed, and monitored according to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itarian standards;

(B) be provided on a needs basis, and not used as a political reward or tool of coercion;

(C) reach the intended beneficiaries, who should be informed of the source of the assistance; and

(D) be made available to all vulnerable groups in North Korea, no matter where in the country they may be located; and

(2) United States non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shall be

contingent on North Korea's substantial progress toward--

- (A) respect for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including freedom of religion;
- (B) providing for family reunification between North Koreans and their descendants and relatives in the United States;
- (C) fully disclosing all information regarding citizen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bduct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 (D) allowing such abductees, along with their families, complete and genuine freedom to leave North Korea and return to the abductees' original home countries;
- (E) reforming the North Korean prison and labor camp system, and subjecting such reforms to independent international monitoring; and
- (F) decriminalizing political expression and activity.

(c) REPORT-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Administrator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describing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 SEC. 203. ASSISTANCE PROVIDED OUTSIDE OF NORTH KOREA.

(a) Assistance- The President is authorized to provide assistance to support organizations or persons that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ns who are outside of North Korea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b) Types of Assistance- Assistance provided under subsection (a) should be used to provide--

- (1)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n refugees, defectors, migrants, and orphans outside of North Korea, which may include support for refugee camps or temporary settlements; and
- (2)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n women outside of North Korea who are victims of trafficking, as defined in section 103(14) of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22 U.S.C. 7102(14)), or are in danger of being trafficked.

(c)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1) IN GENERAL- In addition to funds otherwise available for such purposes, 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to the President \$20,000,000 for each of the fiscal years 2005 through 2008 to carry out this section.

(2) AVAILABILITY- Amounts appropriated pursuant to the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under paragraph (1) are authorized to remain available until expended.

### TITLE III--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 SEC. 301. UNITED STATES POLICY TOWARD REFUGEES AND DEFECTORS.

(a) Report-- Not later than 1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retary of State,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appropriate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nd the Committees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a report that describes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explains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n nationals outside of North Korea.

(b) Contents-- The report shall include--

(1) an assessment of the circumstances facing North Korean refugees and migrants in hiding, particularly in China, and of the circumstances they face if forcibly returned to North Korea;

(2) an assessment of whether North Koreans in China have effective access to personnel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of whether the Government of China is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particularly Articles 31, 32, and 33 of such Convention;

(3) an assessment of whether North Koreans presently have unobstructed access to United States refugee and asylum processing, and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ns who may present themselves at United States embassies or consulates and request protection as refugees or asylum seekers and resettlement in the United States;

(4) the total number of North Koreans who have been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as refugees or asylees in each of the past 5 years;

(5) an estimate of the number of North Koreans with family connections to United States citizens; and

(6) a description of the measures that the Secretary of State is taking to carry out section 303.

(c) Form-- Th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s (1) through (5) of subsection (b) shall be provided in unclassified form. All or part of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ubsection (b)(6) may be provided in classified form, if necessary.

#### SEC. 302. ELIGIBILITY FOR REFUGEE OR ASYLUM CONSIDERATION.

(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clarify that North Koreans are not barred from eligibility for refugee status or asylum in the United States on account of any legal right to citizenship they may enjoy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intended in any way to prejudice whatever rights

to citizenship North Koreans may enjoy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o apply to former North Korean nationals who have availed themselves of those rights.

(b) Treatment of Nationals of North Korea— For purposes of eligibility for refugee status under section 207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7), or for asylum under section 208 of such Act (8 U.S.C. 1158), a nationa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not be considered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 SEC. 303. FACILITATING SUBMISSION OF APPLICATIONS FOR ADMISSION AS A REFUGEE.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undertake to facilitate the submission of applications under section 207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7) by citizens of North Korea seeking protection as refugees (as defined in section 101(a)(42) of such Act (8 U.S.C. 1101(a)(42))).

### SEC. 304.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 Actions in China—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 (1) the Government of China has obligated itself to provide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with unimpeded access to North Koreans inside its borders to enable the UNHCR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refugees and whether they require assistance, pursuant to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Article III, paragraph 5 of the 1995 Agreement on the Upgrading of the UNHCR Miss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UNHCR Branch Offi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ferred to in this section as the 'UNHCR Mission Agreement');
- (2) the United States, other UNHCR donor governments, and UNHCR should persistently and at the highest levels continue to urge the Government of China to abide by its previous commitments to allow UNHCR unimpeded access to North Korean refugees inside China;
- (3) the UNHCR, in order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mandate to protect refugees, should liberally employ as professionals or Experts on Mission persons with significant experience in humanitarian assistance work among displaced North Koreans in China;
- (4) the UNHCR, in order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mandate to protect refugees, should liberally contract with appropriat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have a proven record of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displaced North Koreans in China;
- (5) the UNHCR should pursue a multilateral agreement to adopt an effective 'first asylum' policy that guarantees safe haven and assistance to North Korean refugees; and

(6) should the Government of China begin actively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all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increase levels of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d inside China to help defray costs associated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 presence.

(b) Arbitration Proceedings— It is further the sense of Congress that—

(1) if the Government of China continues to refuse to provide the UNHCR with access to North Koreans within its borders, the UNHCR should initiate arbitration proceedings pursuant to Article XVI of the UNHCR Mission Agreement and appoint an arbitrator for the UNHCR; and

(2) because access to refugees is essential to the UNHCR mandate and to the purpose of a UNHCR branch office, a failure to assert those arbitration rights in present circumstances would constitute a significant abdication by the UNHCR of one of its core responsibilities.

## SEC. 305. ANNUAL REPORTS.

(a) Immigration Information—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every 12 months thereafter for each of the following 5 years,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submit a joint repor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nd the Committees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on the operation of this title during the previous year, which shall include—

(1) the number of aliens who are nationals or citizens of North Korea who applied for political asylum and the number who were granted political asylum; and

(2) the number of aliens who are nationals or citizens of North Korea who applied for refugee status and the number who were granted refugee status.

(b)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The President shall include in each annual report on proposed refugee admission pursuant to section 207(d)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7(d)), information about specific measures taken to facilitate access to the United States refugee program for individuals who have fled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for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identified pursuant to section 402(b) of 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of 1998 (22 U.S.C. 6442(b)). The report shall include, for each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a description of access of the nationals or former habitual residents of that country to a refugee 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1) referrals by external agencies to a refugee adjudication;

(2) groups deemed to be of special humanitarian concern to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refugee resettlement; and

(3) family links to the United States.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

*END*



취, 반발적인 서신 작성 또는 인쇄물 소지를 포함한 정부의 혁명에 역행하는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 엄격한 극형이나 재산압수형에 처한다.

(6) 북한정부는 정치범, 체제 반대자, 본국으로 송환된 탈북자들, 지하교회 조직 멤버들을 노동자들, 학생, 그리고 어린이들이 참석한 공공집회에서 처형시키기도 한다.

(7) 북한정부는 국가안전국이 강요된 노동, 구타, 고문 그리고 처형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수용소에 약 200,000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질병, 굶주림과 햇빛에의 심한 노출 등으로 사망한다.

(8) 미의회에 제공된 북한 수용소 생존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노예노동, 무술연습 상대 그리고 생화학 실험대상으로 쓰여 졌다고 밝혔다.

(9) 미의회에 제공된 목격자의 증언을 포함한 믿을 수 있는 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정부 관리는 수용소내에서의 출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로 유산을 시키고 태어난 신생아들을 죽이는 것은 수용소의 기본 관행이다.

(10) 국무성에 따르면, 북한에서 진정한 종교의 자유란 없으며, 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보고된 바대로 체포, 투옥, 고문 그리고 심지어 처형을 포함하는 형벌을 처함으로써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종교 활동을 철저히 억압하고 있다.

(11) 북한 정부가 이끈 1990년대 초의 중앙집중화된 농업과 공공분배 정책의 실패로 인해 2,00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12) 한 2002 United Nations-European Union 조사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10명당 1명이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으며 10명당 4명은 만성적으로 영양실조인 상태이다.

(13) 1995년 이후로, 미국은 주로 "World Food Program"을 통해 북한의 주민들에게 2,000,000 톤이상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했다.

(14) 미국의 식량지원이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내의 많은 생명을 구한건 사실이지만 북한 내에서의 그러한 식량의 분배에 관련된 투명성 개선에 있어서는 그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 정부는 "World Food Program"의 임의현장 방문에 대한 자격, 한국어 구사 직원 고용과 북한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해 식량지원의 전달을 적절히 감시할 수 있는 등의 접근형태를 부인하고 있다.

(15) 북한 내의 기아의 위험, 교발의 위험 그리고 자유와 기회의 부족은 수많은 아마도 수 천명의 주민들을 고국에서 주로 중국으로 탈주하도록 부추겼다.

(16) 특히 중국으로 탈주한 북한 여성들이나 소녀들은 중국 내에서 납치당하거나 인신매매되어서 성적착취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으며,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신부나 제2의 부인 또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다.

(17) 중국과 북한 정부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내서 강제송환 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오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그들은 고문, 투옥 그리고 처형에 처하게 된다.

(18) 1951년의 "Status of Refugees" 에 관련한 "United Nations Convention" 과 "Status of Refugees" 에 관련한 "1967년 Protocol" 에 대한 협정국으로서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예외 북한 탈주자들을 "경제적 이주자" 들로 분류하고 그들이 본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처하게 될 심각한 위협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돌려보낸다.

(19) 중국정부는 1951년의 "Status of Refugees"에 관한 "United Nations Convention" 과 "Status of Refugees" 에 관한 "1967년 Protocol" 에 대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에 앞서 망명요청이 거부된 탈북자들의 송환거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 중국체류 동안 망명을 구하는 탈북자들은 송환이 된 후에는 보통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종종 처형되기도 한다.

(21) 중국정부는 최 봉일 목사를 포함한 탈북자들을 돕고자하는 외국 aid workers들을 감금, 유죄선고 또는 투옥시켰는데 이는, 중국법에도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22) 2000년 1월, 중국 내에 있던 북한 첩보요원들이 미국영주권자이며 탈북자들을 위해 변호를 해오던 김 동식 목사를 납치했으며 현재 그의 상태와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3)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남한은 전체 탈북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다른 어느 나라들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인 3,800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에게 국내정착을 허용했다.

(24) 탈북자의 정착에 대한 원칙적인 의무는 당연히 남한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탈북자들의 상태에 국제적 관심을 끌고 그러한 ~~인류~~ 인류의 딜레마를 공식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25) 자국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외에도 북한은 아직도 상태나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수많은 남한과 일본 국민들의 유괴에도 책임이 있다.

#### SEC. 4 목적

- (1) 북한 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존중
- (2)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 촉진
- (3)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의 투명성과 접근성, 모니터 향상
- (4)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 (5)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 가속화

#### SEC. 5. 정의

- (1) 적절한 국회 위원회 - "적절한 국회 위원회" 란
  - (A) 하원의 국제관계에 대한 위원회
  - (B) 상원의 외무관계에 대한 위원회
- (2) 중국 - "중국" 이란 "중화공화국"을 의미한다.
- (3) 인도주의적 지원 - "인도주의적 지원" 이란 식량, 의약품, 의료 보급품, 의복과 피난처 등을 포함하는 인도주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원을 의미한다.
- (4) 북한 - "북한" 이란 조선인민 공화국을 의미한다.
- (5) 북한주민 - "북한주민" 이란 북한의 국민이나 주민을 의미한다.
- (6) 남한 - "남한" 이란 대한민국 공화국을 의미한다.

#### TITLE I -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 - SEC. 101. 북한과의 협상에 관한 미의회의 입장

미국과 북한 그리고 동북아 관련국 사이에 이루어질 모든 미래의 협정은 북한의 인권이 주요 요소여야 한다는 게 미의회의 입장이다.

##### - SEC.102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대통령이 2005 회계년도부터 2008 회계년도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a) 지원-대통령은 북한에서 인권, 민주, 법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측과의 적절한 교육 및 문화 교환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도 있다.

##### (b) 정부 지출금의 승인

(1) 일반적 -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회계년도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2) 유용기간 - (1)문단 아래의 정부보조금 승인에 의거한 보조금의 금액은 지출되기 전까지는 유용한 상태로 인정된다.

##### - SEC.103. 대북 라디오방송

(a) 미의회의 입장 - 미국은 북한으로 가는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입을 늘려야 하며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는 대북방송을 Radio Free Asia 와 Voice of America를 통해 현 수준에서 하루 12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다.

(b) 보고 - 이 법안이 제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는 의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현재의 대북방송 실태

(2) 방송을 12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조건들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 포

함)

- SEC.104 정보의 자유 증진

(a) 조치 -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북한정부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외국방송을 송신할 수 있는 라디오국을 포함해서 북한내의 정보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정부 보조금의 승인

(1) 일반적 -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방송 지원을 위해 회계년도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2) 유용기간 - (1)문단 아래의 정부보조금 승인에 의거한 보조금의 금액은 지출되기 전까지는 유용한 상태로 인정된다.

(c) 보고 - 법제정후 1년안에, 그리고 그다음 3년마다, 국무장관은 관련 연방부서와 기관의 장들과 협의의 거친 후 그러한 활동을 담은 내용의 보고서를 특정한 양식을 갖추어서 관련 의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SEC.105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 개선시키는데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다.

(1)유엔 인권위원회는 (UNCHR) 북한 인권실정에 관한 2003/10, 2004/13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히 북한인권상황을 조사할 유엔인권위 특별보좌관을 임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극심한 인권침해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가별 특별 접근과 보고가 필요하다. 자의적 구금에 대한 UN 워킹 그룹, 비자발적인 실종에 대한 워킹 그룹, 식량권 특별보고,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 종교와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 등이 필요하다.

- SEC. 106 지역기구 수립

(a) 조사결과 - 인권, 과학, 교육 협력, 경제와 무역 주제를 다루는 지역 기구로 설립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처럼 여러 나라의 참여에 기반할 때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

(b) 의회의 입장 - 미국은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제안되었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공동의 위원회에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 인권 대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 SEC 107. 북한인권 특사

(a) 대통령은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에 대한 특사(이하 '특사')를 임명할 수 있다. 특사는 인권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b) 주요 목적 - 특사의 주요 목적은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고 조정하는 것이다.

(c) 책임과 의무 - 특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1) 북한 당국과 인권 대화를 이끌어내고
- (2) 미국과 유럽 연합, UN, 북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대화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며
- (3) 북한 인권 청원을 시도했던 비정부기구들과 상담하고
- (4) 섹션 102에서 명시된 활동 기금에 관해 추천하고
- (5) 기술 훈련과 프로그램 교환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보호 개선을 위한 전략을 재검토하며
- (6) UN 인권위원회의 2004년 13 결의안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전시킨다.

(d) 활동 보고 - 법 제정 후 180일 내에,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매년, 특사는 앞선 12개월동안 (c)항에 의거해 수행한 활동 보고서를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Handwritten notes:*  
 7월 25일...  
 2월 23일...  
 1월 11일...  
 1월 11일...  
 1월 11일...

TITLE II - 궁핍한 북한주민 지원

- SEC 201.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보고

(a) 보고 - 미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처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법제정 후 180일 이내에, 그리고 앞으로 매 2년마다 아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1) 미국의 지원을 토대로 북한내 주민들과 탈북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활동

(2) 섹션 202(b)에서 명시된 조건 충족에 있어서의 개선을 포함한 지난해동안의 북한 내에서의 인도주의적 투명성, 감시와 개방의 개선

(3) 지난해동안의 세계식량프로그램을 포함해 미국과 미국의 지원 수여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인도주의적 투명성, 감시와 개방의 개선을 위한 노력

(b) 보고형태 - 세부항목 (a)(1)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필요할 경우 특정한 형태로 보고 되어야 한다.

- SEC.202. 북한 내에 제공되는 지원

(a) NGO 와 국제단체를 통한 지원

(1) 의회가 비록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지지하지만, 그런 지원은 정치적 혹은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가장 어려운 주민들에게 먼저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되고 감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현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보다 큰 접근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3) 미국은 북한에게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 (b) 북한 정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 의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 정부의 어떤 부서, 단체, 존재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모두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국제적인 인도주의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독되어야 하며
    - (B) 필요에 기반해 제공되고, 정치적 보상이나 강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 (C) 의도된 수혜자들에게 지원되고, 원조의 출처를 알려야 하며
    - (D) 그들이 북한 어디에 위치할지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 (2)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다음에 대해 상당한 개선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 (A) 북한이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 (B) 북한주민들과 미국 내 자손 및 친지간의 가족상봉 허용,
    - (C) 북한정부가 납치한 일본인 및 한국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밝히고,
    - (D) 납북자들과 가족들이 북한을 떠나 원래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 (E) 교도소와 강제노동수용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그 개혁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받도록 한다.
  - (F)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과 행동을 기소 혹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 (c) 보고 : 법 제정 후 180일 내에 국제개발부(Administrator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해당 의회 위원회에 이 섹션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SEC.203. 북한 외부로 제공되는 지원

- (a) 지원 - 대통령은 자국을 탈출한 북한주민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 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 (b) 지원의 종류 - 세부항목 (a)에 해당하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 난민, 탈북자, 고아들에게 임시적인 거처나 난민수용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 (2)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의거 북한 외부에서 이루어진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 (c) 정부 보조금의 승인
- (1) 일반적 - 대통령은 이를 위해 회계년도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매년 20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 (2) 유용기간 - (1)문단 아래의 정부보조금 승인에 의거한 보조금의 금액은 지출되기 전까지는 유용한 상태로 인정된다.

TITLE III- 북한난민 보호

- SEC.301.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정책

- (a) 보고 - 법의 제정 후 120일 이내에 국무부는, 다른 연방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의회위원회와 상, 하원 법사위원회에 북한난민의 상황과 그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b) 내용 -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북한난민과 이주자들이 주로 중국지역에서 숨어살며 겪는 상황과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을 때 직면할 상황에 대한 고찰
  - (2)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직원들과의 접촉이 허용되는지, 또한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특히 조항 (Article) 31, 32, 33세 명시된 의무들을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 (3) 미국의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허용되는지의 여부, 또한 미국대사관, 영사관의 보호 혹은 미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는 북한난민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고찰
  - (4) 지난 5년간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북한주민의 수
  - (5) 미국시민권자들과 혈연관계를 지닌 북한주민의 수
  - (6) SEC 303을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
- (c) 양식 (b)의 (1)부터 (5)까지는 비기밀문서로, (b)의 (6)은 필요하다면 기밀문서로 정보를 제공한다.

- SEC.302.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 (a) 목적 -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헌법에 입각해서 시민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누린다고 하여,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 부여에 대한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인해 주어지는 시민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해칠 의도는 없다. 그런 권리들을 이용한 북한출신국민에게도 이를 적용할 의도도 없다.
- (b) 북한주민에 대한 대우 - 미국의 이민과 국적법의 Section 207과 208에 의거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SEC 303. 난민신청 촉진을 위한 방안

국무부는 이민과 국적법의 Section 207에 입각해서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을 촉진시켜야 한다.

- SEC.304.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a) 중국 내의 활동

(1) 중국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북한주민들의 난민 지위 및 지원 필요성을 결정하도록 중국 내 탈북자들을 방해받지 않고 접근하도록 허용하도록 노력하고,

(2) 미국과 UNHCR 후원국, 그리고 UNHCR은 중국이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3) UNHCR은, 난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국 내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4) UNHCR 은, 난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탈북자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한 경력이 있는 적절한 NGO 단체들과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5) UNHCR 은 다자간 합의를 통하여 북한난민들에게 안전한 피신처와 지원을 보장하는 "보호우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관련 국제단체들은 중국지역내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증가시켜서 탈북자들과 연관된 비용부담을 덜게 해야 할 것이다.

(b) 중재상황

(1)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계속 막는다면, UNHCR은 중재자를 임명해서 중재에 나서야 한다.

(2) 난민에 대한 접근은 UNHCR의 직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며 현상황에서의 중재권 포기는 UNHCR이 핵심의무를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일 것이다.

-SEC. 305. 연례보고서

(a) 이주정보 - 법 제정후 1년 이내, 그리고 그 다음 5년 동안 매 12개월마다, 국무부와 국가안전국은 관련 의회위원회에 상,하원 법사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북한 국적이거나 시민이면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으며 허가를 받은 북한주민의 수

(2) 북한 국적이거나 시민이면서 난민지위를 신청했으며 허가를 받은 북한주민의 수

(b) 핵심논쟁국 - 대통령은 제안된 난민허가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핵심논쟁국을 탈주한 개인들의 미국의 난민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해 취한 특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다음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각 핵심논쟁국 들로부터 탈주한 개인들의 난민결심을 이끌어낸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난민판결에 관한 외부 에이전시의 조언

(2) 미국정부에 난민정착 목적과 관련 특수한 논쟁국으로 보이는 국가와;

(3) 미국내 혈연관계